

요약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 증가와 보험금 지급액 급증으로 반려동물 책임리스크가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 개물림 사고의 책임법리는 주별로 ‘원 바이트 법칙(One-Bite Rule)’과 ‘엄격 책임(Stricter Liability)’으로 나뉘는데, 이는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위험과 상품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침. 보험금 지급 증가에 대응하여 미국 보험회사들은 특정 견종 제한 등 언더라이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험관리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한 보험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개물림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건수가 2025년에만 전년 대비 25.6% 증가하였으며, 보험금 지급액은 18억 달러를 초과하는 등 반려동물 책임리스크가 보험산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¹⁾
 - 미국 보험정보연구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Triple-I)에 따르면, 2025년 개물림 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건수는 28,450건으로 전년(22,658건) 대비 25.6% 증가하였음
 - 동 기간 관련 사고에 따른 총보험금 지급액은 18억 6,200만 달러를 기록함
 - 2025년 건당 평균 지급액은 65,450달러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6년 대비로는 약 97% 증가하여 사고당 손해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는 단순 의료비 상승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Settlement), 판결금(Judgment), 배심원 평결액(Jury award) 등 법적 분쟁 비용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처럼 개물림 사고 관련 보험금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부담도 심화되고 있으며, 개물림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와 보험회사의 위험관리 전략이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의 개물림 사고 책임법리는 영국의 보통법(English common law)에 기반한 ‘원 바이트 법칙(One-Bite Rule)’에서 출발하였으나, 현재는 다수의 주(State)가 ‘엄격책임(Stricter Liability)’을 채택하고 있음²⁾
 - 미국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법리는 크게 ‘One-Bite Rule’과 ‘Stricter Liability’로 구분됨
 - ‘원 바이트 법칙(One-Bite Rule)’은 개의 공격성에 대한 견주의 사전인지 여부를 책임 판단의 핵심기준으로, ‘엄격 책임(Stricter Liability)’은 개의 공격 이력과 무관하게 사고 발생만으로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함
 - 미국은 각 주(State)가 독자적인 법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에 대한 책임법리가 상이하며, 이러한 차이는 피해자 보호 수준과 보험회사의 배상위험노출 정도 및 보험상품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침

1)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2026. 4. 10.), "Spotlight on: Dog bite liability"

2)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2026. 1. 26.), "Bite by Bite: Dog Owner Liability by State"

-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일리노이 등 약 31개 주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텍사스, 뉴욕 등 16개 주는 ‘원 바이트 법칙(One-Bite Rule)’을 적용하고 있으며, 펜실베이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등 일부 주는 두 제도를 혼합한 형태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음
-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법리 하에서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완화됨에 따라 보험금 청구 및 손해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보험회사의 지급 부담과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1〉 미국의 개물림 사고 관련 책임 법리 비교

비교 항목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원 바이트 법칙(One-Bite Rule)
책임 기준	개물림 사고 발생 시 원칙적으로 책임 인정	견주의 사전 위험성 인지 여부
피해자 입증 부담	피해자 입증 부담 감소	피해자의 입증 부담 존재
대표 특징	‘사고 발생 자체’가 중요	‘개의 공격성에 대한 사전 인지’가 중요
보험 영향	보험금 청구 가능성, 소송 성공률, 손해율 상승 가능성 증가	피해자의 입증 부담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자료: 저자가 작성함

- 개물림 사고와 보험금 지급 규모 증가에 대응하여 미국 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 책임 담보의 언더라이팅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험회사의 위험관리와 소비자 보호 간 균형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고 있음³⁾
 - 특정 견종에 대한 가입 제한, 보험료 차등 적용, 보장 제외 조항 운영 등 언더라이팅 기준이 강화되고 있음⁴⁾
 - 보험회사별 적용 기준은 상이하나, 일부 보험회사는 핏불(Pit Bull), 로트와일러(Rottweiler) 등 특정 견종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추가 담보 가입을 요구하고 있음
 - 다만, 견종만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관행이 실제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는 위험평가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과 소비자 차별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음
 - 미국 보험감독당국(NAIC)은 2025년 특정 견종 기반 언더라이팅의 적절성과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을 주요 보험 현안으로 다루며 관련 논의를 소개함⁵⁾
 - 이에 따라 뉴욕주와 네바다주 등 일부 주에서는 보험회사가 견종만을 근거로 책임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개별 반려견의 공격 이력, 훈련 상태 등 행동 특성을 반영한 위험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국 사례는 반려동물 사고가 개인의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법률적 책임,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가 맞물린 복합적 이슈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함
 - 특히 개물림 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 강화, 이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동시에 나타남
 - 우리나라는 2021년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미국 사례는 향후 배상책임보험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와 위험기반 언더라이팅 간의 균형이 중요함을 시사함

3) Kin Insurance(2026. 5. 22.), “Restricted Dog Breed List: Home Insurance & Rental Rules”

4) Ilabaca Law(2026. 4. 6.), “Dog Bite Laws by State: Strict Liability, One-Bite Rules, and Your Legal Rights”

5) NAIC(2025. 9. 24.), “Breed-Specific Legislation”